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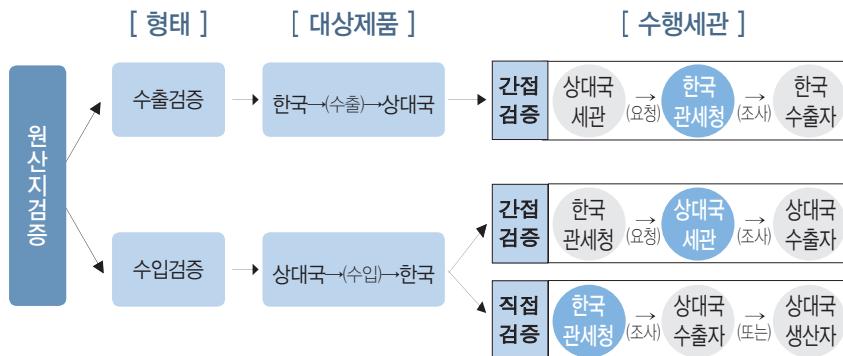
FTA 특혜 확인하는 원산지검증

III 원산지검증은 FTA 특혜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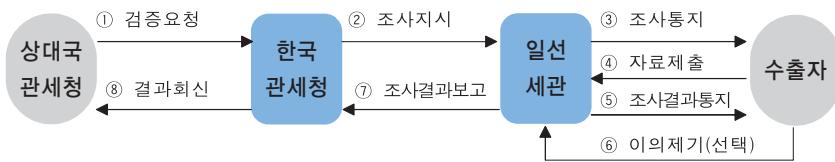
- ▶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여부와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확인을 위하여 국내 수입자, 국내 수출자 · 생산자 및 원산지 증빙서류 발급기관, 체약상대국 수출자 · 생산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원산지 조사 또는 확인을 말합니다.

III 원산지검증의 대상에 따라 크게 수입물품 원산지조사와 수출물품 원산지조사로 구별됩니다.

- ▶ 수입물품 원산지조사는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우리나라로 수입되고, FTA 세율을 적용 받은 물품을 대상으로 합니다.
- 원산지 조사 수행 주체에 따라 수입국 세관이 체약 상대국 수출자 등을 직접 조사하는 직접검증과 수입국 세관이 수출국 세관 등에 검증을 의뢰하여 수출국 세관 등이 수출자를 대상으로 원산지 조사를 실시하는 간접검증으로 구분됩니다.



- ▶ 수출물품 원산지조사는 체약 상대국 관세당국 등의 검증요청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체약상대국으로 수출된 물품을 대상으로 세관에서 수행하는 원산지 조사를 말합니다.



▶ 원산지검증의 방법 및 절차는 FTA 협정별로 다릅니다.

협정	간접검증	직접검증	회신기한
한·칠레	-	1. 서면질의 및 정보요청 2. 수출자 방문조사	30일
한·싱가포르 (순차적용)		1. 수출국 세관을 통해 수출자·생산자에게 정보요청 2. 수출자 방문조사	접수일부터 30일 이내
한·EFTA	수출국 세관에 검증요청 (필요시 검증참관 가능)	-	10개월
한·아세안 (순차적용)	1. 수출국 발급기관에 검증요청	2. 수출자 방문조사	2개월 (최대 6개월)
한·인도 (순차적용)	1. 수출국 발급기관에 검증요청	2. 수출자 방문조사	3개월 (최대 6개월)
한·EU	수출국 세관에 검증요청 (필요시 공동조사 가능)	-	10개월
한·페루	수출국 세관에 검증요청	1. 수출국 세관을 통해 수출자에게 서면자료 요청 2. 수출자 방문조사	(직접) 30일 (간접) 150일
한·미	수출국 세관에 검증요청 (섬유·의류제품만 해당)	1. 수출자에게 서면 질의 2. 수출자 사업장 방문조사	-
한·터키	수출국 세관에 검증요청 (필요시 검증참관 가능)	-	10개월
한·호주	수출국 발급기관에 검증 요청	1. 수출자에게 서면질의 2. 수출자 방문조사	30일
한·캐나다	-	1. 수출자에게 서면질의 2. 수출자 방문조사	30일
한·중 (순차적용)	1. 수출국 발급기관에 검증요청	2. 수출자 방문조사 (수출당사국 세관 참관)	6개월
한·베트남 (순차적용)	1. 수출국 발급기관에 검증요청	2. 수출자 방문조사 (수출당사국 등의 필요)	6개월
한·뉴질랜드	-	1. 수출자에게 서면질의 2. 수출자 방문조사 (수출당사국 세관 참관)	90일
한·콜롬비아	수출국 세관에 검증요청	1. 수출자에게 서면요청 2. 수출자 방문조사 (수출당사국 세관 참관)	(직접) 30일 (간접) 150일

☰ 원산지검증 결과에 따라 사후조치를 취합니다.

- ▶ 원산지검증 결과 수입물품이 협정관세 적용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한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의 차액(가산세 포함)을 징수합니다.

협정관세 적용배제 사유

- ① 정당한 사유없이 수입자, 체약상대국 수출자·생산자가 요구자료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직접 수출자·생산자 직접(서면·현지) 조사
 - 서면조사 요청에 대해 회신기한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하는 경우
 - 현지조사 등의 요청에 대해 통보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 현지조사시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산지증빙서류의 확인에 필요한 장부 또는 관련 자료에 대해 접근을 거부하거나 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 ③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수입자·수출자·생산자 등을 직접조사하거나,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간접조사를 요청한 결과
 -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이 회신기한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정보(원산지 결정기준, 직접운송 등)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 ④ 원산지 사전심사를 신청한 수입자가 자료를 고의로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또는 사전심사서에 기재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⑤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의 거부·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⑥ 조사대상자의 부도, 폐업, 소재불명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 ⑦ 조사대상자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 반복적으로 원산지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잘못 작성한 사실이 있는 체약상대국 수출자 등이 수출한 동종동질물품에 대해 협정관세 적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 원산지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원산지 증빙서류 등을 보관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또는 벌금이 부과 됩니다.

구 분	위반 내용	처분
벌금 (제2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산지 증빙서류를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았거나 작성·발급한 경우 – 용도외 사용하거나 양도한 경우 – 원산지 입증서류 등을 미 보관한 경우 	2천만원 이하의 벌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산지 증빙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여 발급받았거나 작성·발급한 경우 	3백만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 (제2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이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원산지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산지 증빙서류의 오류를 통보 받고도 세액정정, 수정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